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4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이정헌・박홍배・박민규

이훈기 · 김 현 · 황정아

민형배 · 허성무 · 한민수

최민희 · 김영환 · 이병진

정진욱 • 서영교 • 임미애

박희승 • 이워택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 금·특별공로금·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,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 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,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제10조제2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생	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	<u><삭 제></u>
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	
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	